



제 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보통신공사 대금의 지급보증〉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94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정보통신공사 대금의 지급보증(안 제26조의2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해민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 16.

다. 회 부 일 : 2025. 1.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수급인에 대한 대가 지급의 규정을 두고 있고, 민간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공사 및 소방공사에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이나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간 민사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이 잦은 실정임.

이에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 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통신공사의 공정한 계약이행과 발주자, 수급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의 2 및 제7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정보통신공사 대금의 지급보증(안 제26조의2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공사의 수급인이 발주자(국가등¹⁾ 제외)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단,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이 곤란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공제료를 지급하여야 함(안 제26조의2 제1항).
-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2항).
-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공제료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함(제3항·제4항).
- 안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의 균형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를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중소 공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의 제공 또는 보험료·공제료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8조 제1항 제4호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6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등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 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

현행	개정안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료등의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u> ③ <u>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발주자가 촉구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u> ④ <u>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u> ⑤ <u>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u> 제78조(과태료) ① ----- ----- -----.

현행	개정안
1. ~ 4. (생략) <u><신설></u>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u>
5. ~ 9. (생략) ②·③ (생략)	5. ~ 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자인 공사계약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공사대금의 지급이 보증되나²⁾,
- 민간 공사계약에서는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인 으로서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어 왔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대가의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 이에 「건설산업기본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경우 각각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였으나,
-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아직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건설공사 관련 지급보증제도 현황>

법률	의무 내용	제재수단
건설산업기본법 ³⁾	- 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 시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시설공사업법 ⁴⁾	- 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 시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 200만원 이하 과태료
전기공사업법	-	-
정보통신공사업법	-	-
(개정안)	- 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 시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3)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아니할 수 있다.
- ③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 발주자가 최고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의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 제21조의4(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에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고 공사대금 관련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안 제78조 제1항 제4호의2는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발주자뿐만 아니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지 않은 수급인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26조의2 제1항은 수급인이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에 발주자가 이에 상응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을 뿐, 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 자체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또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해당 수급인과 계약을 하지 않거나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지 않은 수급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③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발주자가 촉구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 방법이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촉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의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앞서 언급한 「건설산업기본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또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지 않은 수급인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사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대금지급을 받지 못했을 때 소송비용 부담이 큰 상황임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공정계약 및 발주자·수급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다만, 아래와 같이 민간 발주자의 일부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대부분 당사자 간 공정계약을 위한 취지에 공감하여 개정안에 동의하며, 다만 소규모 공사의 경우 보증비용 부담이 하청업체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령을 통해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반면, 개정안의 내용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⁵⁾ 중복적인 규제로 규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5)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의견도 있음.

문 의 처
02)6788-5230